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두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5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 : 윤두현 · 구자근 · 김상훈

김석기・김정재・조수진

김용판 · 윤재옥 · 김승수

정희용・金炳旭・ 추경호

송언석 · 이철규 · 김희국

강대식 · 김영식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농지·초지·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, 이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농가 인구는 25 7만명으로 47%가 감소하였고, 특히 청년층 비율은 11.0%로 낮아진 반 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은 38.4%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그 비율이 49.3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나라 농

어업은 쇠퇴 국면에 직면할 수 있음.

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영농후계자의 육성과 농어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71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2년 12월 31일"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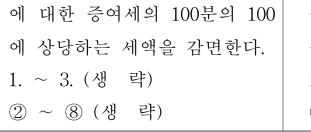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	제71조(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
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	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
면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	면) ①
모두 충족하는 농지·초지·산림	
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·	
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·	
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	
용 토지등·염전 또는 축사용지	
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	
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	
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	
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	
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	
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	
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	
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	
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<u>20</u>	<u>20</u>
<u>20년 12월 31일</u> 까지 증여하는	22년 12월 31일
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	

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⑧ (현행과 같음)